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418 증권관련집단소송, 2016카기44 소송허가신청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 이준식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김주영, 송성현, 박필서, 김정은, 임진성, 구현주
피고 : 삼일회계법인

2. 총원의 범위

2013. 4. 1. 15:17부터 2013. 10. 1. 10:12까지 사이에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10. 1. 10:12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1) 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2) 청구의 원인

동양네트웍스는 2012 회계연도에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들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음에도, 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면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동양네트웍스의 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서, 동양네트웍스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적정의견을 표시하였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동양네트웍스의 존속가능성에 미칠 중대한 영향에 관하여 특기사항의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동양네트웍스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위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이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 1. 28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종언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참여관 이우탁
*전화 : 02-3271-1240 팩스 : 02-704-4064